

# 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

□ 펀드명 : 트러스톤 장기채권 증권 모두자신탁[채권]

변경 사유	변경 전	변경 후
자투자신탁 추가	<p><b>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b></p> <p>① ~ ② (생략)</p> <p>③이 투자신탁은 법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투자신탁의 모두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집합투자업자의 결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0조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p> <p>1. ~ 5. (생략)</p> <p>&lt;신설&gt;</p>	<p><b>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b></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이 투자신탁은 법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투자신탁의 모두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집합투자업자의 결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0조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p> <p>1. ~ 5. (현행과 같음)</p> <p><b><u>6. 트러스톤 장기성장40 퇴직연금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u></b></p>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p><b>제15조(투자대상자산 등)</b></p> <p>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p> <p>1.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u>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u></p>	<p><b>제15조(투자대상자산 등)</b></p> <p>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p> <p>1.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u>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u></p>

	<p>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한다)</p> <p>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u>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u> 또는 <u>한국주택금융공사법</u>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p> <p>3. ~ 9. (생략)</p> <p>② ~ ③(생략)</p>	<p>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한다)</p> <p>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p> <p>3. ~ 9. (현행과 같음)</p> <p>② ~ ③(현행과 같음)</p>
<p>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p>	<p><b>제17조(운용 및 투자 제한)</b></p> <p>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생략)</p> <p>2. (생략)</p> <p>가. (생략)</p> <p>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p>	<p><b>제17조(운용 및 투자 제한)</b></p> <p>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p>

	<p>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u>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u>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u>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u>에 따른 <u>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u>,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3. ~ 9. (생략)</p>	<p>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3. ~ 9. (현행과 같음)</p>
<p>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p>	<p><b>제45조(공시 및 보고서 등)</b></p> <p>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p> <p>1. (생략)</p> <p>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p>	<p><b>제45조(공시 및 보고서 등)</b></p> <p>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p> <p>1. (현행과 같음)</p> <p>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u>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u></p>

	<p>3. ~ 10. (생 략)</p> <p>② ~ ⑨ (생 략)</p>	<p><u>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u></p> <p>3. ~ 10. (현행과 같음)</p> <p>② ~ ⑨ (현행과 같음)</p>
-	<신 설>	<p><u>부 칙</u></p> <p><u>(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23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u></p>